



제426회국회(임시회)
제2차 행정안전위원회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
소방청장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〉

■ 이만희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8522호)

2025. 7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나 아 정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만희의원 등 10인
2. 제안연월일 : 2023. 12. 8..
3. 회부연월일 : 2023. 12. 1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,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찰공무원,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.

이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Ⅲ. 검토의견

1.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소방청장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

개정안은 퇴직소방공무원의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 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소방청장이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현행	개정안
제13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(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 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3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소방공무원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	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법은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과 관련하여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(제13조제1항),

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도 하여금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(제13조제2항),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제13조제3항).

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, 2024년도에 퇴직예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, 소방청이 주관하는 퇴직소방공무원 취업지원 관련 사업은 없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 소방학교에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은 미비한 실정임.

<소방공무원 퇴직 현황>

퇴직년도	평균	2027	2026	2025	2024	2023	2022	2021	2020
현황(명)	1,067	1289	1309	1112	968	674	1234	1089	867

(자료: 소방청)

<2024년도 퇴직예정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학교 내 교육 현황>

시도	교육과정명	교육대상	교육인원	교육일수	연간 과정개설 횟수
서울	퇴직예정자 실무	소방위 이상 퇴직예정자	25	5	1
부산	퇴직예정자 실무	전계급 퇴직예정자	30	3	1
광주	퇴직 대비 소방시설점검 교육*	소방위~령 퇴직예정 5년내	30	3	1
광주	퇴직예정자 실무	소방위~령 퇴직예정 2년내	35	5	1
경기	소방공무원 퇴직준비	공로연수자	20	10	2
강원	퇴직예정자 소방시설 전문 교육*	소방위~정 퇴직예정자	20	2	1
강원	퇴직대비반	소방위~정 퇴직예정자	20	5	1
충청	퇴직예정자 인생 2막 설계 과정	퇴직예정자	30	3	2
대구	퇴직예정자 미래설계	퇴직예정자	20	3	1
경남	상반기 퇴직준비교육	퇴직예정자	20	5	1
경남	하반기 퇴직준비교육	퇴직예정자	20	5	1
연간 교육인원 ¹⁾			320		

* 소방공무원 퇴직 후 관련 경력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실무 교육임.

(자료: 소방청)

1)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× 연간 과정개설 횟수

이에 비해 경찰공무원²⁾의 경우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(제11조)³⁾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⁴⁾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(제1항부터 제3항까지)

국가로 하여금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비용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(제4항).

이에 따라 경찰청은 퇴직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하여 전직지원 등 교육사업, 취업지원 등 컨설팅 사업, 취업정보제공 등 정보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2)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,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등 유사성이 있음.

3)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11조(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(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)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사업의 집행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.

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

제9조(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)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 **제1항부터 제3항까지**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, 사회적응교육·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<경찰공무원 퇴직지원 체계5>

구 분			주요 내용	운영주체
교육	전직지원	퇴직설계	퇴직 인식변화, 미래설계전략, 인생 진로설정 등	경찰청
		전직심화	일자리 인식·전략, 직업군 이해, 성공실패 사례	
	위탁교육		귀농귀촌·기능성 약용 자원·곤충사업 등	위탁기관
	지역특성화		지역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 고려한 지역별 직무교육 지원(시도경찰청 사업선정시)	시도경찰청
	전직역량개발 교육비 지원		이직하려는 직업과 연관성이 높은 교육·자격증 취득시 심의 후 최고 100만원 한도 내 지원 ※ 1인당 퇴직 전 1회 限 (자기부담금 10%)	시도경찰청
컨설팅	상담 및 취업지원		· 퇴직 전 기초·심층 상담 · 퇴직 후 취업알선·사후관리 컨설팅 · 1:1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등	경찰청 (전직지원센터)
	찾아가는 컨설팅		· 신청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※ 센터 원거리 또는 퇴직예정자 다수 順	
정보제공	취업정보제공		퇴직경찰관 대상 취업정보제공	경찰청
	퇴직 이후 삶 안내		퇴직‘예정’경찰관 가이드북(연금정보·퇴직공무원 취업 심사제도·퇴직 후 복지도 등 안내)발간·배포	

(자료: 경찰청)

참고로 인사혁신처도 퇴직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, 전직지원컨설팅 사업, 은퇴지원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⁶⁾⁷⁾ 2025년의 예산이 약 11억 3,000만원 편성되는 등 관

5)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컨설팅 지원 현황 및 퇴직예정경찰관 교육지원 사업 현황은 [참고 1] 참조

6) - 인사혁신처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를 근거로 하여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-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대상 사업의 상세 내용은 [참고 2], [참고 3] 참조.

「공무원연금법」

제84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)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런 예산이 한정적이고 퇴직하였거나 퇴직을 앞둔 모든 국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퇴직 지원사업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5조(퇴직공무원 후생복지)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·운영,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6조(사업의 위탁)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7) 참고로 군인은 「공무원연금법」이 아닌 「군인연금법」의 적용 대상이므로, 제대 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은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음.

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직업교육훈련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(중·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·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취업지원 등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취업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취업지원을 한다.

1. 장기복무 제대군인

2.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.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,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,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,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, 업체 등의 신고, 보훈특별고용,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3조의2, 제33조의3,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

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·직업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

2. 전상(戰傷)이나 공상(公傷)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인사혁신처의 2025년 퇴직공무원 지원 사업 현황>

(단위: 백만원, 명)

구 분	‘25년 예산	참가인원(예상)	비고
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	499	401	
전직지원컨설팅	200	500	
은퇴지원 교육	430	29,000	
퇴직공무원 인력뱅크	1.9		
계	1,130.9	29,901	

(자료: 인사혁신처)

개정안은 퇴직소방공무원 교육 예산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청장이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퇴직공무원 교육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방공무원 퇴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사업실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유사 직군인 경찰, 군인의 경우 퇴직자를 위한 사업에 예산 근거가 별도 마련되어 있고 전직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, 타 직군과 형평성에 맞게 퇴직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주체를 “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비용부담 주체를 사업 실시 주체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한편,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법문의 구성과 관련해서,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3조제3항의 법문 구조를 존중하여 법문 구조를 통일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,

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3항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개정안은 시행일을 ‘ 공포한 날’로 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351

참고 1

경찰청의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사업 현황

(자료: 경찰청)

<퇴직경찰관 취업지원 컨설팅 지원 실적>

(단위: 명, 백만원)

연도	컨설팅 신청 인원	컨설팅 실시 인원	컨설팅 예산	예산 집행액	컨설팅 내용, 수강생 1인당 컨설팅 시간	컨설팅을 받은 퇴직경찰관의 취업 실적
2021	1,742	1,742	930	958	- 내용 : 1:1상담, 취업알선, 면접클리닉, 사후관리 등 - 1인당 최소 10시간 - 컨설턴트 : 12명	1,253명 취업 - 보안직 874명 - 사무시설관리 108명 - 전문조사직 76명 - 교육서비스직 106명 - 기타 89명
2022	1,749	1,749	903	922		1,286명 취업 - 보안직 972명 - 사무시설관리 108명 - 전문조사직 36명 - 교육서비스직 102명 - 기타 69명
2023	1,803	1,803	922	953		1,347명 취업 - 보안직 1,042명 - 사무시설관리 118명 - 전문조사직 27명 - 교육서비스직 102명 - 기타 60명
2024	1,860	1,860	903	953		1,435명 취업 - 보안직 1,115명 - 사무시설관리 136명 - 전문조사직 81명 - 교육서비스직 64명 - 기타 39명

<퇴직예정경찰관 교육 지원 사업 실적>

(단위: 명, 백만원)

연도	전체 퇴직예정 경찰관 인원수	퇴직예정 경찰관 교육신청 인원	퇴직예정 경찰관 교육실시 인원	교육 예산	예산 집행액	교육 내용, 교육 시간, 교육기간
2021	3,059	1,890	1,503	537	502	퇴직설계과정(4월~11월) 4박5일/32시간 전직심화과정(4월~11월) 4개과정/3박4일 과정별28시간
2022	3,543	2,292	1,527	539	520	퇴직설계과정(4월~11월) 4박5일/32시간 전직심화과정(4월~11월) 3개과정/3박4일 과정별20시간
2023	3,525	2,401	1,695	810	779	퇴직설계과정(3월~11월) 4박5일/32시간 퇴직심화과정(3월~11월) 4개과정/3박4일 과정별20시간
2024	4,327	3,055	1,787	810	736	퇴직설계과정(4월~11월) 4박5일/28시간 퇴직심화과정(4월~11월) 4개과정/4박5일 과정별28시간

참고 2

일반직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항

「국가공무원법」	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	「공무원연금법」	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
□ 제52조(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)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,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(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)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,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[제1장 총칙] 제1조(목적) 제2조(정의) 제3조(적용범위) 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 [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] 제5조(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) 제6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) 제7조(기본항목) 제8조(자율항목) 제9조(복지점수의 사용한도) 제10조(복지점수의 부여기준) 제11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 제12조(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) 제13조(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·운영) 제14조(통합운영 등) [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] 제15조(운영기관장의 책무) 제16조(건강관리 등의 지원) 제17조(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제17조의2(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) [제4장 문예·체육 활동 등의 지원] 제18조(운영기관장의 책무) 제19조(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) 제20조(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) 제21조(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) [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] 제21조의2(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대상 등) 제21조의3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제21조의4(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) [제5장 보칙] 제22조(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) 제23조(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)	□ 제83조(공무원 후생복지) -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 시책 수립시행 -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⇒ ‘전직지원컨설팅’ 근거 조항 □ 제84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) -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관련 시책 마련 - 위원회 운영, 자료요청, 사회기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⇒ ‘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’ 근거 조항 □ 제85조(퇴직공무원 후생복지) -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 -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□ 제86조(사업의 위탁) -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	□ 제85조(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- 후생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포함 내용 - 제2항제6호 공무원의 퇴직지원 준비 □ 제86조(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) - 공단의 후생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포함내용 등 □ 제87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) □ 제88조(위원회의 운영) □ 제89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) □ 제90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) □ 제91조(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) -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, 대부자금 및 사무실 임대 이율 등

참고 3

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지원 현황

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(Know-how+)

- (근거) 「공무원연금법」 제84조 및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7조~제90조

제84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)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공무원연금법 시행령>

제87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), 제88조(위원회의 운영)

제89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), 제90조(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)

- (목적)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행정사각지대 해소('17년~)
- (예산/현황) '25년기준 49.9억원 / 3개 분야 49개 사업, 401명 참가자

분야	사업 내용
국민안전	· 재난대비, 식품·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
사회통합·행정혁신	· 사회적 약자 배려,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 행정 효율성 강화 지원
경제 활성화	· 중소 영세기업 지원,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, 농업 통계 조사 등

- (참여대상) 만50세 이상 퇴직공무원* / 1년단위로 위촉계약 체결

* 지방공무원 포함 / 참여기관에서 사업별로 세부자격 요건 설정

- (활동내용) 월 57시간 이내 활동 후 실적에 따라 활동비 지급(월 150만원 이내)

<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체계>



□ 전직지원컨설팅

- (근거) 「공무원연금법」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

<공무원연금법>

제83조(공무원 후생복지)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공무원연금법 시행령>

제85조(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
3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
4.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
5. 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
6.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
7.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

- (목적) 퇴직(예정)공무원에게 경력설계, 취·창업 등을 위한 1:1맞춤형 컨설팅*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

* 일반컨설팅(경력설계, 자기탐색 등), 집중컨설팅(취·창업, 구직활동 지원 등)

- (예산/현황) '25년기준 2억원 / 500명대상 컨설팅(5월이후 예정)
- (참여대상) 퇴직 전·후 3년 이내 국가·지방공무원
- (운영절차) 대상자 선발 → 1:1 맞춤형 컨설팅 → 사후 관리

대상자 선발	1:1 맞춤형 컨설팅	사후관리
· 시기 : 연중 수시 · 방법 : 선착순 * 공문 및 SMS 안내	· 횟수 : 개인별 3~8회(조정 가능) · 방법 : 대면상담 원칙 * 필요 시 유선상담 가능	· 지원기간 : 사업 종료 1년 후까지 · 주요내용 : 적합정보 지속 제공, 지원서류 및 면접 등 준비 지원

※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실시

□ 퇴직공무원 인력뱅크

- (목적) 재취업, 사회공헌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퇴직공무원 일자리 종합포털
 - * 기존 'G-시니어' 포털을 일자리 콘텐츠를 강화하여 퇴직공무원 인력뱅크로 변경('23. 12.)
- (예산/현황) '25년기준 19백만원 / '24년말 기준 등록인원 약19만여명

<퇴직공무원 인력뱅크 운영 체계>



□ 은퇴지원 교육 실시

- **(목적)** 공무원이 퇴직 후 경제·사회·심리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식제고와 체계적 생애설계 지원
- **(예산/현황)** '25년기준 43억원 / 연간 약29,000명 교육 예정
- **(참여대상)** 퇴직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공무원
- **(주요내용)** 생애주기와 관심사항 등을 고려한 온-오프라인 교육 운영
 ※ (5년 이내) 미래설계 → (3년 이내) 재취업/창업/귀농귀촌/사회공헌/금융전문 → (1년 이내) 여가활용/협업과정

<노후준비 단계별 퇴직준비교육(연금공단)>

기본과정	심화과정
미래설계	공단과정 재취업, 창업, 귀농귀촌, 사회공헌, 금융전문, 여가활용 협업과정 귀어촌, 귀산촌, 귀농귀촌, 산림문화, 산림치유

< 인사처 퇴직지원 프로그램 요약 >

(단위 : 백만원, 명)								
주관	사업명	연도	예산	참여 인원	대상	경찰	소방	군인
인사처	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	'23	3,963	321	만50세이상 퇴직공무원	○	○	○
		'24	4,546	371				
		'25	4,989	401				
	전직지원컨설팅	'23	200	501	퇴직 전·후 3년 이내 공무원 ※ 경찰·군인은 관련 부처 운영	-	○	-
		'24	200	517				
		'25	200	-				
공단	퇴직인력뱅크 ※ '23. 12월 구축	'24	11	194,637	구직희망 퇴직공무원	○	○	○
		'25	19	-				
	은퇴지원교육	'23	5,092	26,264	퇴직 전 5년 이내 공무원 ※ 경찰연수원 교육 우선 활용	○	○	-
		'24	4,048	28,719				
		'25	4,300	29,200				